



김영미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회원*

1. 이슈의 확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양형기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양형기준에 고려한 양형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현행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보니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연 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대법원 양형위

원회에서도 2019년 ‘디지털성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범죄까지 포섭하여야 하는지 등 개념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규정 안에서 보면,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면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 보면 인터넷 공간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범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¹⁾에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 법무법인 송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카메라,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촬영,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편집,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터넷 공간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범죄로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소지죄,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허위영상물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유포, 제5항 소지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함에도 그동안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유형, 불법촬영물 및 그에 대한 유포행위에 초점을 맞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그런 상황이 된 데에는 남녀노소 대부분이 카메라와 인터넷 접속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지하철 계단, 숙박업소, 워터파크 등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며 홍보 및 교육을 해왔지만 한번 늘어난 범죄 횟수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자살 등 심각한 피해, 불법

촬영물 유포를 수익모델로 사업을 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만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20년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이 검거되면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일명 '텔레그램 n번방',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라고 말한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되고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였다.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을 쓴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 등이 어렵고, 대화 내역을 지우는 기능이 있고, 대화방이 없어지면 가해자 휴대폰이나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가해자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n번방이라는 명칭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 물이 올라온 데서 붙은 것이며,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운영한 데서 붙은 이름이다. n번방은 음란물 및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이 2018년 하반기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시초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로, 그는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일명 n번방) 채팅방을 만든 뒤 지속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렸다. 갓갓은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경찰 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후 신상공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요구했다. 그러나 갓갓은 2019년 2월 켈리에게 자신의 방을 준 뒤 돌연 자취를 감췄다. 갓갓 이후 n번방을 운영한 켈리는 2019년 9월 자취를 감췄는데, 이들이 떠난 뒤에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사 n번방(로리대장태법, 박사방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다 2019년 7월 n번방을 모방해 더욱 자극적인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박사방이 등장했다.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쓴 운영자(조주빈)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으며, 이후 신상정보는 물론 여성들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찍게 했다. 특히 조 씨는 이들 여성들을 노예라 지칭하면서 몸에 '노예'나 '박사'라는 표식을 새기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들게 해 '박사의 지시에 따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가해자들은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어려운 금품을 받은 뒤

방문자들에게 해당 채팅방으로 향하는 링크를 공유했는데, 이곳에 입장한 사람들은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사방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은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으로 운영됐으며,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씨는 입장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향후 박사방의 정보가 새나갈 경우 협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했다. 또 거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진행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²⁾

이러한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수법과 영상물 유포방법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들은 평범해 보이는 조주빈의 모습 이면에 그토록 잔혹하고 대담한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거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 재판 중인 주범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14개에 이른다. 조주빈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하여 행한 다양한 범죄행위도 함께 기소되었다.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얼굴을 모른 상태에서 범죄단체처럼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

2)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링연구소)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조주빈이 범한 범죄³⁾

- ① 2019. 9.부터 2020. 2.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 ② 이러한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배포한 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영리목적유포)
- ③ 2019. 8.부터 12.까지 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한 행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 ④ 이렇게 제작한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행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등(영리목적배포)
- ⑤ 15세 피해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 - 협박죄
- ⑥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가하도록 한 행위 - 강간미수
- ⑦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예고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 박사방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행위 - 강요죄
- ⑧ 공범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도록 하여 받은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⑨ 공범으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해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챙긴 행위 - 사기미수죄
- ⑩ 기타 사기죄, 유사강간죄, 무고죄 등

럽다. 이들의 범죄행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키보드에 글자를 입력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좀 더 잔인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 영상물이 무한대로 퍼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며, 오프라인의 다양한 범죄 유형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양형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범죄유형은 불법촬영, 촬

영물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유통 방조행위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범죄유형은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온라인 상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 성적 괴롭힘행위가 있다.

사진 합성은 2020. 3. 24. 성폭력처벌법 개정되기 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법위반(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되었기에 디지털 성범죄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2020. 3. 24.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14조의2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합성, 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3) CBS노컷뉴스, 2020.4.13. 3:51 입력, “검, ‘박사방’ 조주빈 등 3명 재판에...14개 혐의”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죄를 신설하여 사진 합성은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로 논의된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촬영, 촬영물 비동의 유포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수년간 논의되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분석대상 판결 중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1건(전부무죄 9건, 일부무죄 2건)이 있었다.⁴⁾ 2017년 분석대상 판결 중 벌금형은 54.1%, 집행유예는 27.7%, 징역형은 11.0%, 선고유예는 5.9%, 무죄는 1.0%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발표한 보

〈표 1〉 1심 형벌 종류

1심 형벌종류	[2011년~2016년 4월]		[2017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징역	82	5.32%	41	11.1%
벌금	1,109	71.97%	200	54.1%
집행유예	226	14.67%	103	27.8%
선고유예	115	7.46%	22	6.0%
전부무죄	9	0.58%	4	1.1%
합계	1,541	100.00%	370	100.0%

출처: 윤덕경 외(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분석대상 판결의 선고형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형에 비해 벌금형은 17.8%, 벌금형 선고유예는 1.5% 줄어들었고, 징역형은 5.7%, 집행유예는 13.1% 증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⁵⁾

그렇지만 여전히 행위의 위법성에 비해 양형은 낮았고, 법원의 낮은 형벌이 재범율을 높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불법촬영물 비동의 유포에 대해서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분석대상 판결 중 촬영물이 유포된 64건에서, 1심에서 선고유예된 사건은 6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20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17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21건이었다. 유포행위에 징역형이 선고된 17건 중 가장 낮은 형은 4월이었고, 가장 높은 형은 3년이었다. 벌금형이 선고된 20건 중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12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8건이었다.⁶⁾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분석대상 판결 중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34건으로, 이 중 1심에서 선고유예된 사건은 2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7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17건이었다. 유포행위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중 가장 낮은 형은 6월이었고, 가장 높은 형은 1년 4월이었다. 벌금형이 선고된 7건 중 300만 원 이하의

4)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31면.

5) 윤덕경 · 김정혜 · 천재영 · 김영미 · 유경희(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1면.

6)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앞의 자료집, 88~89면.

벌금형이 4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3건이었다.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판결에 비해 2017년에 선고된 판결은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선고형은 여전히 낮았다.⁷⁾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한 실제 판결문을 통해 그동안 법원의 양형이 어느 정도 선고되었는지 살펴보자.

① 불법촬영

지하철 전동차 안,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촬영, 다양한 장소의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 남의 집을 훑쳐보며 사위하는 모습, 나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 자고 있는 연인의 나체를 촬영, 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지하철 *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126)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모텔에서 전날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

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280)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건물 4층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653)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지하철 출구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3개월간 총 3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96)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② 비동의유포

텀블러 등 웹하드, 소라넷 등 포르노사이트,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등 단체방 등에 불법촬영자나 비동의유포임을 알면서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유포한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성교 후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

7)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디지털성범죄 피해회복과 양형'

고도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d로부터 피해자와 성교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710)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과거 교제를 하던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등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게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82)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③ 유통, 공유

비동의유포임을 알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유포하거나, 이들의 유포를 알면서 방치한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어 처벌되었는데, 죄명이 정보통신망법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에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5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00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 50만 원 선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여러 곳에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등 총 683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78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악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c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c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명불상자들이 업로드한 남녀가 실제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등을 링크시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90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각 벌금 100만 원 선고

④ 유포협박

피해자의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피해자와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하겠다는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현행법상 협박죄, 강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상물을 수단으로 2차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주변사람들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자,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과 섭섭함을 공공연히 토로하였다. 피고인은 둘 사이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도록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겠다고거나, 그 사진의 수위를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896)

→ 협박죄: 벌금 3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다른 남자 친구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난 더 잃어버릴 것이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너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65)

→ 협박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하여 공소기각판결

⑤ 성적괴롭힘

인터넷이나 SNS, 단톡방 내에서 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평가, 인터넷 게임 중에 성적인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위반(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되고 있어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죄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을 통해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등 신체촬영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처벌되거나,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처벌된 사례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범죄유형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루밍’ 범죄로 취급될 뿐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15세인 피해자의 나체사진 70개와 동영상 파일 20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았다.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음란물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요구했던 점, 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파일들을 수차례 본 점,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유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아동음란물소지)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신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노예’ 또는 ‘개’가 되는 주종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를 개처럼 취급하며 명령하고 개처럼 포즈를 취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e사이트에 피해자의 영상물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후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3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 3년 선고

그러다가 2018년 웰컴 투 비디오(W2V)라는 다크웹에서 운영되었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되어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 손정우는 2015년 6월경 W2V라는 다크웹을 처음 개설하여 영아, 유아, 및 아동을 성착취한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 포르노는 8테라바이트에 달했고, 2018년 2월 기준으로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고, 서버에는 영상 파일 20만 개가 보관 중이었다. 중복 자료 없는 약 25만 개의 아동 포르노가 업로드 중이었으며, 이 중 45%는 기존에 알려진 영상이 아닌 웰컴 투 비디오에서만 발견된 영상이었다고 한다. 손정우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폭행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여 415비트코인(2020년 5월 5일 기준 약 4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⁸⁾ 이러한 행위로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켈리’와 고담방을 운영했던 닉네임 ‘와치맨’은 조주빈보다 먼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켈리’ 신모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가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켈리’ 신모씨는 이미 확정된 범죄 이외에도 텔

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또 다른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⁹⁾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씨는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선고를 선고 받았고,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에게도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¹⁰⁾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는 2019.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여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¹¹⁾

4.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선고하는데 참고하도록 그 기준을 설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각 범죄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고 판사에 대한 권고적 기준에 해당하지만 양형기준이 있으면 심각한 범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유사한 사안임에도 판결하는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형의 격

8)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웰컴투비디오 사건

9) 연합뉴스, 2020. 6. 5. 15:33 입력, ‘경찰, n번방 계승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10) 연합뉴스, 2020. 6. 5. 15:45 입력, ‘제2 n번방 주범 10대 징역 10년 법정최고형...공범도 중형(종합)’

11) 여성신문, 2020. 5. 26. 10:07 입력, ‘와치맨 신모씨, “성착취 영상 공유해 얻은 이익 하나도 없다”

차를 줄일 수 있으며, 재판장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성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는 양형기준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 어떤 범죄이든 법률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사는 양형기준이 없더라도 법정형 내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없으니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이미 선고된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하거나, 성범죄의 영역 중 디지털 성범죄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었던 강간,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 사건의 양형등을 참조해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보니 입법자도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하였고¹²⁾, 재판에서도 강간, 강제추행보다는 피해가 적다는 인식 때문에 대체로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그렇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2010년을 넘어서면서 점점 증가하다가 최근까지도 연간 5,0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범죄의 발생건수가 상당히 높다. 게다가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정준영 단톡방 유포사건, 여성연예인의 죽음 등 사회적인 파장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되었다. 이후에도 w2v다크웹, n

번방 사건 등을 통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2020년 상반기에 해당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기본, 가중, 감경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권고 형량범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양형인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비교, 형량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권고 영역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한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양형인자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양형기준이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양형기준 설정시 반영하지 못한 고려 사유가 있거나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나 참작사유와는 다른 평가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은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사유의 존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권고 형량범위에 속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양형기준에는 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가 있다. 양형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12) 디지털 성범죄 중 대표적인 조문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법정형(2020. 5. 19. 개정 전)은 징역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3)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에도 법원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문에 실시된 양형 이유를 보면,¹⁴⁾ 양형에 있어서 감경요소로 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② 형사 처벌전력 없음, ③ 자백 또는 반성 ④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⑤ 촬영된 영상 및 피해 정도 ⑥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음, ⑦ 기타 사정(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태도, 재범방지 다짐, 자수, 자발적 영상 삭제, 피고인의 나이 또는 특성-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였고, 가중요소로 ① 범행횟수·기간 및 피해자의 수, ② 동종범죄 처벌전력, ③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가 중함, ④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문에 실시된 양형이유에서도 ① 피해자와 합의 여부, ② 형사 처벌전력 유무, ③ 자백 또는 반성 유무 ④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⑤ 피해정도 ⑥ 기타 사정(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태도, 재범방지 다짐, 자수, 자발적 영상 삭제 등), ⑦ 유포 여부 등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였다¹⁵⁾.

이렇게 재판장이 양형이유에서 가중,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없는데다가 기본적으로 기준 형량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 실제 판결은 위에 인용한 자료와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위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가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를 멈추는 대신에 끊임없이 ‘들키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며 진화된 범

죄 수법으로 가해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해자들이 범행을 계속하게 된 데에는 법원의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낮은 선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5.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고려할 점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이지만,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 개인을 넘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모가 광범위하며, 영상물이 존재하는 한 피해가 영구적이며,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 및 전문가단체들을 통해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필자도 (주)화난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2일의 기간 동안 총 20,298명의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에 관해 의견을 수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14)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앞의 자료집, 91면 이하.

15) 윤덕경 외(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가중요소	감경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옹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범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 • 가해자가 영상 삭제에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 기타

다음 표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감경사유에 명시적으로 답변한 국민들 중 97%(응답 8,100명 중 7,906명)가 감경사유를 두는 것에 반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이 훨씬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영상에 가학적인 요소 포함
- 정상적이지 않은 변태적 성행위를 촬영 후 유포
- 전 애인에게 보복하는 행위의 유포
- 협박을 동반한 범행. 스토킹 등 다른 범죄를 동반한 범행
- 불법촬영/유포/소비 등의 내용을 숨기기 위하여 혹은 영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비(예: 파일 백업) 한 바가 있다.

〈가중사유에 대한 국민 의견 발취〉

① 행위의 죄질이 나쁜 경우

- 협박을 해 촬영
-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 해킹 및 사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협박해 촬영하게 함
- 경찰이라고 신분을 위조해 신상을 얻고 그 신상을 이용해 협박하여 자위나 자해 영상을 찍게 함

②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이다.
- 피해자가 음주, 약물중독 등 심신미약일때 촬영한 경우
-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 또는 그외 취약 계층인 경우

③ 유포 규모

- 유포대상이 광범위
-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접근가능하게 유포한 경우

- 범죄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매개를 이용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 매체특성상 그 영상을 모두 지우기 힘들다는 점은 매우 큰 가중사유입니다
-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 주변지인들과 공유함(단톡방)
- 공유하는 방식 음란물을 공유받기 위한 목적
-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캡처본, gif 파일 등의 더욱 공유하기 쉬운 형태로 재가공 하여 유포하였다/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
- 유포영상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처벌
- 단톡방이나 SNS계정, 사이트, 커뮤니티 등 다수의 사람이 열람 가능한 곳이 아니더라도 피해 당사자를 포함 타인과의 일대일 대화방에서 유포한 경우
-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유포가 된 경우

④ 피해자 규모, 행위 횟수

- 촬영 및 유포 횟수가 많은 경우
- 피해자가 많은 경우
- 오랜 기간 피해 촬영물을 받아낸 경우
- 검거 횟수가 아닌 범행 횟수를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
- 범죄의 기간 ex) 3회를 5달에 걸쳐 협박한 경우 3회를 1주일에 걸쳐 협박한 경우보다 가중처벌
-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촬영 및 유포

⑤ 동종범죄를 범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동종 범행전과를 적발 기준이 아니라 불법촬영, 유포 횟수를 추적하여 가중하여야 함
- 상습적 범행인 경우
- 디지털성범죄/성범죄 등 동종 범죄 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 기타 성범죄 항목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있다.

⑥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

-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상을 함께 공개한 경우(해당 유형 중 일반적 의견)
-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가능하게 촬영한 경우(해당 유형 중 일반적 의견)
- 피해자의 이름·SNS·학교·지역·나이·전화번호·직장 등 개인정보유출
- 특정 신체부위(점, 배꼽, 흉터)로 피해자 간접적 유추가능
- 촬영 도중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밝힌 경우

⑦ 촬영 부위 심각한 경우

-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⑧ 계획적 범죄인 경우

-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미리 약물을 구입하거나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 핸드폰이 아닌 특수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일 경우(고의, 사전에 준비)
- 인터넷 문의글, 범죄장소에서 머물며 피해자를 물색
- 단독 범행이 아니라 타인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촬영 유포한 경우

⑨ 영리목적인 경우

- 피해 촬영물을 팔아 이득을 취한 경우
- 유포해서 금전적 이익을 봤다
-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이익을 창출했다면 더 큰 형벌을 부과해야 함
- 피해촬영물 상업적 이용을 홍보한 경우, 피해 촬영물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 유포물을 통한 상업적 행위

⑩ 범행 후 정황

- 피해자에게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 합성이나 썸네일, 캡처 등 2차 저작물을 제작하고 유포
-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어렵게 만들
- 유포된 음란물을 이차 가공하여 배포한 경우
- 판결 전 영상, 사이트, 링크를 삭제하여 증거말소
- 피해자 본인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 협박죄로 고소 후 보복성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
- 피해자가 도움을 찾을 시 보복을 예고
- 불법촬영물을 개인 클라우드나 usb등에 따로 저장해둔 경우
- 피해자가 자해, 자살시도, 일상생활 어려움과 같은 정신과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⑪ 장소의 경우

- 일상에서 촬영 (길을 걷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 -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에 붙어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불법촬영
- 여자화장실 혹은 탈의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찍은 경우
- 고의적인 설치가 의심되는 공간(화장실, 모텔 등) 설정 및 의도(협박, 합성)가 의심되는 불법 촬영

⑫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 사회적 위치 또는 권력 이용(예: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몰래 찍은 경우/회사 상사가 아랫사람을 찍은 경우)
-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위력을 가진 사람(예: 보호자/선생님/선배 등)일 경우
- 가족이나 친인척 등 반인륜적인 근친범죄일 경우
- 직업적 위계를 이용(경찰관, 아청기관종사자)
- 배우자/연인/가족/보호자 등 피해자와의 친근한 관계 및 신뢰관계를 이용

⑬ 기타 가중사유

- 최초의 영상파일의 녹화 시기가 오래 지났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뒤야 함. 삭제할 수 있었던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악의성이 더 짙기 때문에
- 가해자의 직업이 교육, 법관, 공직자 일 경우(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공무원 등)
- 범죄 계정 공유해 간접 유포행위
- 피의자가 불법촬영 장소의 시설물이나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거나 또는 그와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을 범죄에 이용(예: 숙박업소 직원 및 운영자, 욕실기구/보일러 등 방문 설치기사, 부인과/비뇨기과/ 흉부외과 종사자, 모텔, 디비디방 등 숙박/유흥 업소 종사자거나 그 종사자와 가담해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경우)
-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가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 영상물 플랫폼의 사업자인 경우
- 범죄 이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 의견 발취>

① 자수, 자백한 경우

- 자수/자백한 경우
- 진심 어린 참회의 마음으로 자수
-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수한 경우
-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상 및 상세한 범죄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 유포한 곳, 거래 역 등 자신의 범죄에 대해 성실히 공개

②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손해배상
- 피해자와 합의한 동시에 피해자가 아무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확증과 피해자의 의견이 감경시켜도 된다면 그때
- 피해자와 대면 사과 (대신 가해자는 눈을 가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습을 숨기거나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와 충분한 피해보상, 영상 삭제 등을 한 이후 피해자가 합의
-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할 줄 아는 성인이며 합의를 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든 대화를 들어보았을 때 정말 협박은 하나도 없고 합의한 것이 확실한 경우

③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 피해자 전원과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 피해자 전원과 비강압적 관계에서 합의했다.
- 피해자 '전원'이 감경하는 데 동의했다(한 명이 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경하지 않는다)

④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영상 전부 삭제
- 영상 삭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 (예: 자신이 유포한 영상을 남이 재유포한 영상까지 모두 SNS와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 할 것. 이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손해는 온전히 가해자 자신이 감당해야 함)
- 평생토록 해당 범죄 자료 삭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을때만 감경
- 해당 영상 최초 배포분 삭제 뿐만 아니라 영상이 유통된 경로에 대하여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다.
- 영상 삭제를 위해 삭제 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했을 시

⑤ 수사협조한 경우

- 가담한 자들의 신상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보하여 추가 범죄자들의 검거에 기여
- 같이 영상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 제보하고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가담자나 범죄 현장을 제보한 경우
- 공범의 정보를 제공
-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움(공범자 신고, 사건자료 넘김 등)

⑥ 초범인 경우

- 전과가 없는 초범
- 불법촬영물 200장의 사진을 찍은 것이 한 번에 적발되어도 1건이 아니라 200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⑦ 진지한 반성

- 가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고 내부고발 등 개선에 노력을 했다.
- 본인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반성문을 작성해 본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에게 배포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 가해자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반성 및 사과를 하였다.
- 단순반성문이 아닌 향후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본인의 성인지교육, 영상삭제를 위한 노력, 성착취 반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SNS 및 유튜브 등 소셜활동기록 제출)
- 법원이 지정한 장소(지면이나 웹사이트)에 반성문 겸 사회적 계도를 하는 글을 올린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공인된 지면과 웹사이트에(없으면 만들어서) 진지한 반성문과 다른 가해자들에게 범죄의 무거움을 알리고 가해를 중지할 것을 권하는 글을 올리면 감경시킨다.
- 피의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죄, 반성

- 디지털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디지털의 특성상 완벽한 영상 삭제가 어려우므로 감경사유가 있어서는 안 됨
- 이미 영상은 유포되었고, 영상을 본 모든 이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사죄와 영상 삭제를 위해 하는 노력 등은 자신이 선택하여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저야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 초범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초범이어도 계획적으로 벌인 일하기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 감경사유 없습니다. 초범이라 반성하고 있어서 등등 이런 감경 사유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히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다든가 앞길에 창창한 청년이라든가 하는 이유로 감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없음. 성폭력은 특이나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 및 범위를 알기 어려우며 사진/동영상 등이 한 번 유포될 경우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매우 어렵고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음. 그렇기에 어떤 반성을 하거나 합의를 해도 감경사유 없음.

⑧ 감경사유 없음

- 감경될 수 없습니다. 소비 자체만으로도 감경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피해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 기여도를 따져 감경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비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 전혀 없음.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든 아니든 이미 다 봤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음
- 피해자와 합의해도 감경 절대 안됩니다. 영상 삭제도 감경받으려는 목적일 뿐 절대 반성이 아님. 감경해주면 동종범행 저지를 것이 확실함, 소극적 방관도 큰 죄 >> 감경 사유 절대 없음

⑨ 기타 감경사유

- 피해자 전원의 치료비용 완치 시까지 지불
-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일시적 보상이 아닌, 피해자에게 종신적으로 정기적인 경제적인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을 약속함(매년 확인필요, 불이행시 재산압류, 처벌 진행).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 가해자가 제3자에 의한 협박 및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 가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로부터 받음
- 재범가능성이 없음

- 우발적이다.
- 실수로 들어가게 됐다.
- 영상을 퍼트리지 않았다.

6. 결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계기로 20대 국회 임기 마감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형량이 상향되었으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신설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관련 입법은 마련되었으니,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는 책무는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에 넘겨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격살인’ 행위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매우 크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은 지금보다 높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길 바란다.